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허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746 호
- 다. 제출일자 : 2019. 5. 31.
- 라. 회부일자 : 2019.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 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입 수납액 (B)	세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계	차기 이월	순세계 잉여금
1,202,535	1,202,535	0	1,161,801	902,221	259,580	228,040	31,540

가. 세입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1,202,535	1,202,535	1,185,113	1,161,801	23,312	325	22,987	98.0%

나. 세출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1,202,535	1,202,535	1,130,261	902,221	228,040	72,274	93.9%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 변경사용)

4. 결산 개요

가. 세 입 (결산서 p.44~45)

-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1조 2,025억 35백만원의 98.5%인 1조1,851억 1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0%인 1조 1,618억 1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233억 12백만원으로 이중 3억 2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29억 8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단위: 백만원, %)

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	
	1,202,535	0	1,185,113	1,161,801	23,312	325	22,987	98.0

- 하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9,711억 68백만원임.
- 영업수익은 7,429억 55백만원임.
 - 사용료 수익 6,877억 36백만원
 - 기타영업수익 552억 19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2,282억 13백만원임.
 - 이자수익 50억 21백만원
 - 타회계전입금 2,211억 56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20억 36백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2,139억 45백만원임.

• 투자자산처분(대여금회수)	8백만원
• 유형자산처분(토지)	203억 1천만원
• 비유동부채수입(차입금)	150억원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 등)	1,621억 92백만원
• 유보자금	164억 35백만원

○ 세입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0~51, p.64~65)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징수율 (C/B)
합 계			1,202,535	1,185,113	1,161,801	23,312	325	98.0
하수도사업수익			984,921	971,168	951,686	19,482	0	98.0
영 업 수 익			759,920	742,955	723,477	19,478	0	97.4
		사 용 료 수 익	710,829	687,736	673,751	13,985	0	98.0
		기타영업수익	49,091	55,219	49,726	5,493	0	90.1
영 업 외 수 익			225,001	228,213	228,209	4	0	100.0
		이 자 수 익	1,804	5,021	5,021	0	0	100.0
		타회계전입금	221,177	221,156	221,156	0	0	100.0
		기타영업외수익	2,020	2,036	2,032	4	0	100.0
자 본 적 수 입			217,615	213,945	210,115	3,830	325	98.2
투 자 자 산 처 분			12	8	8	0	0	100.0
		대여금회수수입	12	8	8	0	0	100.0
유 형 자 산 처 분			21,073	20,310	20,310	0	0	100.0
		토 지	21,073	20,310	20,310	0	0	100.0
비 유 동 부 채 수 입			15,000	15,000	15,000	0	0	100.0
		기타비유동부채	15,000	15,000	15,000	0	0	100.0
자 본 잉 여 금 수 입			165,555	162,192	161,456	736	0	99.5
		시 설 분 담 금	36,137	48,207	47,473	734	0	98.5
		타회계건설보조금	123,874	108,626	108,624	2	0	100.0
		공 사 부 담 금	5,544	5,359	5,359	0	0	100.0
유 보 자 금			15,975	16,435	13,341	3,094	325	81.2
		수 용 가 미 수 금	15,187	13,908	11,827	2,081	318	85.0
		기 타 미 수 금	788	2,527	1,514	1,013	7	59.9

○ 전년도 대비 2018회계연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1,185,113	1,161,801	-	-	1,185,113	1,161,801
하수도사업수익			971,168	951,686	-	-	971,168	951,686
		영업수익	742,955	723,477	-	-	742,955	723,477
		사용료수익	687,736	673,751	-	-	687,736	673,751
		기타영업수익	55,219	49,726	-	-	55,219	49,726
		영업외수익	228,213	228,209	-	-	228,213	228,209
		이자수익	5,021	5,021	-	-	5,021	5,021
		타회계전입금	221,156	221,156	-	-	221,156	221,156
		기타영업외수익	2,036	2,032	-	-	2,036	2,032
자본적수입			213,945	210,115	-	-	213,945	210,115
		투자자산처분	8	8	-	-	8	8
		대여금회수수입	8	8	-	-	8	8
		유형자산처분	20,310	20,310	-	-	20,310	20,310
		토지	20,310	20,310	-	-	20,310	20,310
		비유동부채수입	15,000	15,000	-	-	15,000	15,000
		기타비유동부채	15,000	15,000	-	-	15,000	15,000
		자본잉여금수입	162,192	161,456	-	-	162,192	161,456
		시설분담금	48,207	47,473	-	-	48,207	47,473
		타회계건설보조금	108,626	108,624	-	-	108,626	108,624
		공사부담금	5,359	5,359	-	-	5,359	5,359
		유보자금	16,435	13,341	-	-	16,435	13,341
		수용가미수금	13,908	11,827	-	-	13,908	11,827
		기타미수금	2,527	1,514	-	-	2,527	1,514
이월재원수입			-	-	-	-	-	-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	-	-	-	-	-

나. 세 출

-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1조 2,025억 35백만원임.
- 집행액은 1조 1,302억 61백만원으로 이중 9,022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2,280억 4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0%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22억 74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2018	1,202,535	1,202,535	0	1,130,261	902,221	228,040	72,274	94.0

□ 예비비 (결산서 p.42, p.60~61, p.70)

-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21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음

□ 이월 (결산서 p.76~83)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51건, 2,280억 4천만원임.
 - 건설개량이월¹⁾은 10건, 900억 56백만원
 - 사고이월은 41건, 1,379억 84백만원

1)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건설개량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율(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6억 56백만원
·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5억 48백만원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27억 13백만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1천만원
· 오류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억 1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359억 5천만원
·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89억 16백만원
·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80억원
·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30억 2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억 57백만원

○ 건설개량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561억 29백만원	(62.3%)
· 사전절차지연	327억 13백만원	(36.3%)
· 기타	12억 14백만원	(1.4%)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4천 3백만원
---------------------------	---------

용역

·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	3억 76백만원
· 하수관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6억 93백만원
·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8억 56백만원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기술용역	3억 8천만원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7천 5백만원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2천 5백만원
·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중량물재생센터 운영)	2억 9백만원
·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66억 15백만원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2억 1천만원
·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 운영모델수립 용역	7천 3백만원
· 서울형 하수도 시뮬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2억원
· 관리동 승강기, 실험실 증축공사(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억 79백만원
· 한남빗물펌프장 유역 하수관로 정비	8천 9백만원
·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1억 72백만원
· 강서구청사거리~가량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39억 17백만원
· 신대방동 36042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2억 1천만원
· 목동 도시재생사업구간노후 하수관로 개량	6천만원
· 내수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5억 2천만원
·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6억 84백만원

· 3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개선(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9억 13백만원
· 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중량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4억 78백만원
·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13억 93백만원
·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억원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03억 97백만원
·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7억 39백만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3억 85백만원
·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3억원
· 오류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억 86백만원
·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0억 38백만원
·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6억 93백만원
· 중량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279억 5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4천 9백만원
·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169억 73백만원
·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	261억 43백만원
· 물재생센터 슬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81억 79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 개선	20억 2백만원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용역	1억 25백만원
·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2억 27백만원

기본계획 수립

- 중량물재생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1억 33백만원
- 답십리1동 내수재해위험지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3천 8백만원

○ 사고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946억 62백만원 (68.6%)
- 사전절차지연 366억원 (26.5%)
- 기타 67억 22백만원 (4.9%)

□ 전용 (결산서 p.84~85)

- 예산전용은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등 총 4건, 8억 9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증인일
			증 액	감 액	
총 4건		83,225	809	809	
1	인력운영비(인건비)	9,670	-	95	18.11.19
	인력운영비(퇴직급여)	541	95	-	
2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동력비)	8,494	-	235	18.12.21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수선유지교체비)	5,869	235	-	
3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동력비)	17,333	-	424	18.12.21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수선유지교체비)	17,822	424	-	
4	중량물재생센터 운영(동력비)	22,822	-	55	18.11.19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인건비)	591	55	-	

□ 변경사용 (결산서 p.84~85)

- 예산 변경사용은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등 총 3건, 1억 91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3건		30,458	191	191	
1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시설비)	12,751	-	101	18.05.14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감리비)	250	101	-	
2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감리비)	351	-	35	18.12.07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시설비)	6,785	35	-	
3	인력운영비(보수)	9,670	-	55	18.11.19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6	55	-	

□ 불용(결산서 p.96~112)

- 집행잔액(불용액)은 722억 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0%임.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162억 14백만원 (22.4%)
- 집행사유 미발생	56억 1천만원 (7.8%)
- 예산 절감	53억 96백만원 (7.5%)
- 예비비 잔액	87억 21백만원 (12.0%)
- 집행 잔액	363억 33백만원 (50.3%)
합 계	722억 74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4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계획변경 ·취소액	사유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6,357	570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구간과 일부 중복되어 공사구간 변경(축소)에 따른 공사비 감소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6,300	15,200	국비 재원협의를 위한 배정잔액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4	244	한강유역청과의 국고보조금 이자협의 지연으로 인해 집행실적 저조, 19년 예산 편성하여 1월에 국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완료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200	200	악취저감 위한 탈황시설 재생탑 긴급 추가 설치(2017년 낙찰차액 사용)

□ 세출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46~47, p.52~61, p.66~71)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합계	1,202,535	1,042,309	902,221	228,040	72,274	94.0
		하수도사업비용	404,989	375,823	365,903	9,756	29,330	92.8
		영 업 비 용	396,564	375,625	365,705	9,756	21,102	94.7
		관 거 비	84,472	80,763	78,638	1,969	3,865	95.4
		처 리 장 비	282,214	265,851	258,538	7,304	16,371	94.2
		일 반 관 리 비	29,877	29,011	28,528	483	866	97.1
		영 업 외 비 용	204	197	197		7	96.6
		지급이자및취급제비	204	197	197		7	96.6
		예 비 비	8,221	0	0	0	8,221	0.0
		자 본 적 지 출	797,546	666,486	536,318	218,284	42,945	94.6
		유형자산취득	121,661	106,907	96,023	10,977	14,660	87.9
		토 지	55	0	0	0	55	0.0
		건 물	500	483	204	279	17	96.6
		구 축 물	101,375	89,648	81,117	8,624	11,634	88.5
		기 계 장 치	19,446	16,546	14,471	2,074	2,900	85.1
		차 량 운 반 구	110	88	88	0	21	80.0
		공 기 구 비 품	174	142	142	0	33	81.6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01,800	386,237	266,953	207,306	27,540	94.5
		건 설 중 인 자 산	501,800	386,237	266,953	207,306	27,540	94.5
		비유동부채상환	23,279	23,279	23,279	0	0	100.0
		정부차입금원금상환	3,000	3,000	3000	0	0	100.0
		기타비유동부채상환	20,279	20,279	20,279	0	0	100.0
		기타자본적지출	150,306	150,063	150,063	0	244	99.8
		정부보조금반환	306	62,667	62,667	0	244	20.6
		기타자본적지출	150,000	150,000	150,000	0	0	100.0
		예 비 비	500	0	0	0	500	0.0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세항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1,202,535	902,221	-	-	1,202,535	902,221
하수도사업비용		404,989	365,903	-	-	404,989	365,903
영 업 비 용		396,564	365,705	-	-	396,564	365,705
관 거 비		84,472	78,638	-	-	84,472	78,638
처 리 장 비		282,214	258,538	-	-	282,214	258,538
일 반 관 리 비		29,877	28,528	-	-	29,877	28,528
영 업 외 비 용		204	197	-	-	204	197
지급이자및취급제비		204	197	-	-	204	197
예 비 비		8,221	0	-	-	8,221	0
자 본 적 지 출		797,546	536,318	-	-	797,546	536,318
유 형 자 산 취 득		121,661	96,023	-	-	121,661	96,023
토 지		55	0	-	-	55	0
건 물		500	204	-	-	500	204
구 축 물		101,375	81,117	-	-	101,375	81,117
기 계 장 치		19,446	14,471	-	-	19,446	14,471
차 량 운 반 구		110	88	-	-	110	88
공 기 구 비 품		174	142	-	-	174	142
비 가 동 설 비 자 산 취 득		501,800	266,953	-	-	501,800	266,953
건 설 중 인 자 산		501,800	266,953	-	-	501,800	266,953
비 유 동 부 채 상 환		23,279	23,279	-	-	23,279	23,279
정 부 차 입 금 원 금 상 환		3,000	3000	-	-	3,000	3000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상 환		20,279	20,279	-	-	20,279	20,279
기 타 자 본 적 지 출		150,306	150,063	-	-	150,306	150,063
정 부 보 조 금 반 환		306	62,667	-	-	306	62,667
기 타 자 본 적 지 출		150,000	150,000	-	-	150,000	150,000
예 비 비		500	0	-	-	500	0
이 월 예 산 지 출		-	-	-	-	-	-
하수도사업비용		-	-	-	-	-	-
유 형 자 산 취 득		-	-	-	-	-	-

다.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 (결산서 p.119 ~120)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은 6조 6,458억 62백만원임.
- 자본은 6조 6,361억 47백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²⁾은 99.8%임.
- 부채³⁾는 97억 14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2%임.
- 2018년도말 기준 채무⁴⁾는 15억원으로 부채의 15.4%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9,714	9,714	-	9,714	-
채 무	1,500	1,500	-	1,500	-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21)

- 2018회계연도에서는 834억 1백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음.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E=(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 + F-G)	영업외수익 (F)	영업외비용 (G)
(52,177)	742,955	765,453	(22,498)	29,679	83,401	148,685	13,107

※ 당기순이익(손실) = 영업이익(손실)+영업외수익-영업외 비용

2)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3)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4)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3)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 (결산서 p.123)

- 2018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일치함.

5. 검토 의견

가. 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1,618억 1백만원, 지출액은 9,022억 21백만원임.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95억 8천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⁵⁾ 900억 56백만원, 사고이월액 1,379억 8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4천만원임.
- 2018년 이전 세입세출 현황이 부재한 사유는 2018.1.1.일자로 기존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른 것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8년도	1,202,535	1,202,535	0	1,161,801	902,221	259,580	228,040	31,540

- 순세계잉여금(315억 4천만원)은 수납액의 2.7%에 해당함.
-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8,916억 4천만원, 총 비용은 8,082억 39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834억 1백만원임.

5)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결산서 p.121)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당기순이익(손실)	83,401

나. 세입 결산

-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 2,025억 3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13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 1,618억 1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8.0%)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2018	1,202,535	1,185,113	1,161,801	23,312	325	22,987	98.0

-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내역의 경우 시효소멸⁶⁾이 3억 25백만원으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차년도 이월액의 경우 229억 8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시효소멸의 경우 결손처분하기에 앞서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정지나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등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54억 94천만원)”과 “기타(149억 6천만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6)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기업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23,312
	결손처분	325
	시효소멸	325
	차년도 이월액	22,987
	무재산	964
	행방불명	31
	납세태만	5,494
	소송계류	8
	국외이주	62
	자금압박	1,468
	기타(지연납부, 일시적 체납 등)	14,960

다. 세출 결산

1) 총괄

-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1조 2,025억 35백만원임.
- 집행액은 1조 1,302억 61백만원으로 이중 9,022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2,280억 4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0%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22억 74백만원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18	1,202,535	0	809 △809	191 △191	1,202,535	902,221	228,040	72,274	94.0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46~47)

- 예비비⁷⁾는 세출 예산현액의 0.72% 수준인 87억 2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7)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예산액	지출액
8,721	0

3) 예산이월 (결산서 p.76~83)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총51건, 2,285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9%임.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51	228,040	19	150,791	7	69,313	-	-	25	7,936

-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1,507억 91백만원(19건, 66.1%), 사전절차지연 693억 13백만원(7건, 30.4%), 기타 79억 36백만원(25건, 3.5%)에 해당되는 바,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기 사업계획 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대상지 현황파악이나 지하지반상태조사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할 것임.

○ 이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유
23건							
1	물재생 계획과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233	210	-	90.1%	일반경쟁입찰 추진과정에서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 진하였으며, '18.12.14 최 종 용역계약체결되어 이월
2	물재생 계획과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 타 당성조사 및 기본계 획	500	300	-	60.0%	용역정상추진중이나 과업기 간이 총18개월로 절대과업기 간 부족
3	물재생 계획과	하수도사업 경영효율 화를 위한 최적 운 영모델 수립 용역	150	73	-	48.7%	제한경쟁입찰추진하였으나2 회유찰되어2018.6.27계약체 결되어이월함.
4	물재생 계획과	서울형 하수도 시물 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200	200	-	100.0%	일반경쟁입찰추진과정에서2 회유찰되어수의계약을추진하 였으며, '18.10월 말 용역 계약체결되어 이월
5	물재생 계획과	노후기반시설(하수관 로) 실태평가 기술용 역	400	376	24	94.0%	용역계약이12월체결되어용역 추진을위한절대과업기간부족 으로사고이월
6	물재생 계획과	한남빛물펌프장 유역 하수관로 정비	150	89	3	59.3%	침수모의검증을 위한 추가과 업 수행으로 용역기간부족으 로 사고이월
7	물재생 계획과	망원배수구역 침수해 소	1,000	739	120	73.9%	배수개선대책 설계용역 지연 으로 침수해소사업 공사 발 주가 늦어짐에 따라 연내 집 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8	물재생 계획과	강서구청사거리~가 양빛물펌프장 간 하 수압거 정비	6,488	3,917	-	60.4%	통신관로(KT, SKT, LG 등) 이설이 6개월 지연되었으며, 서울시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야간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9	물재생 계획과	신대방동 360-42번 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350	210	30	60.0%	과업물량 증가로 인한 추 가기간 소요로 사고이월
10	물재생 계획과	개봉 배수분구 하수 관로 종합정비	2,000	1,038	4	51.9%	도급공사 계약지연(행정소 송)으로 인한 절대공기부 족
11	물재생 계획과	목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60	60	-	100.0%	공동도급사가법정관리를신청 함에따라준공기한연기및용역 대금지급보류요청으로인하여 사고이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유
12	물재생 계획과	내수재해위험지구 수 위계 설치	4,600	3,520	347	76.5%	18.11월 배정 예산으로 공 사이행 사전절차 및 조달청 계약, 동절기 도로굴착금지 기간 포함 등 절대공기 부족
13	물재생 계획과	답십리1동 내수재해 위험지구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81	38	3	46.9%	용역기한이 2019년 10월까 지로 사고이월
14	물재생 시설과	중량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 시설 설 치	38,000	27,905	38	73.4%	○국비 190억원 지원 및 국비매칭 추경 20억원 편 성되어 예산액 증가 ○국비190억원이'11월에교부 되어연내집행어려움
15	물재생 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3,200	16,973	38	51.1%	"○국비 166억원 지원 및 국비매칭 36억원 추경편성 으로 예산액 증가 ○'18.11월국비166억원교부 되어연내집행어려움."
16	물재생 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60,000	26,144	81	43.6%	○국비 300억원 지원 및 국비매칭 80억원 추경편성 으로 예산액 증가 ○'18.11월국비300억원교부 되어연내집행어려움.
17	물재생 시설과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용역	300	125	49	41.7%	○현재 용역계약 후 '19.03월 준공할 계획으 로, 사고이월 필요
18	물재생 시설과	중량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490	227	73	46.3%	○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 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 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다각적인시설현대화사업방 안마련등을위한절대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용역기간연기 (`18.10.31→`19.1.21)에따 른사고이월
19	물재생 시설과	노후기반시설 실태평 가 기술용역	400	380	20	95.0%	○2018.7.26. 노후기반시 설에 대한 통합기준을 담 은 과업내용서가 안전총괄본 부로부터 통보되어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되어 2018.11.16. 수의계약 체결
20	물재생 시설과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한 정밀안 전진단 용역	82	75	7	91.5%	사업기간이 '18.10.21 ~ '19.2.20으로 '19년 2월 용 역 준공
21	물재생 시설과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27	25	2	92.6%	사업기간이 '18.12.11~ '19.5.10.으로 '19.5월 용역 준공
22	중량물 재생센 터	중량물 재생센터 공 통분야 유지보수	19,724	7,807	272	39.6%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계 약금액 사고이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사고 이월율	사유
23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200	478	61	39.8%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 ‘서울형 하수도 시뮬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은 하수도 평가/계획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2억원 전액 이월하였음.
 - 이는 일반경쟁입찰 추진과정에서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2018년 10월이 되어서야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의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후 관련 학회나 대학연구소,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입찰에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유찰 예방은 물론 경쟁유발을 도모해야할 것임.
-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빛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는 2010년 침수지역인 강서구청사거리 일대에 대한 하수암거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64억 88백만원 대비 60.4%인 39억 17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이는 저촉시설물인 통신관로(KT, SKT, LG 등) 이설이 6개월 지연되었고, 서울시 교통소통대책(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4990호, 2015.9.7.)에 따라 야간 작업시간이 당초 22시~익일06시까지에서 23시~익일06시까지로 1시간 단축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임.

<통신관로 현황>

구 분	규 격	유관기관	연 장
통신관로	D100× 2열	sk브로드밴드	24.2m
	D100× 2열	LG U+	20.9m
	D100× 4열	SK텔레콤	51.3m
	D100× 2열	드림라인	25.2m
	D150× 4열	KT	104.4m
	D150× 12열	KT	62.5m

- 유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배수체계 개선, 통수능 확보 등 기능회복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안전 시설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20억원 대비 51.9%인 10억 38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이는 행정소송에 따른 도급공사 계약지연으로 하반기 발주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8년 10월 2공구 시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를 부적격으로 통보하였는데,
- 시공사가 낙찰자지위보존 가처분 신청(2018카합20447)을 하였고, 2018년 12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2공구에 대한 공사 계약 및 시행이 2018년 12월 10일에서야 체결됨에 따른 것임.

- 이는 입찰순위 결정 이후 순위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다보니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바, 응찰서류 제출과정에서 사전에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는 방안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내수재해위험지구 수위계 설치’는 하수관로 평가기법의 검토정을 통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수재해위험지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타당성이 높은 시설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실강우 기반의 하수관로 운영자료 획득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46억원 대비 76.5%인 35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이행 사전절차, 조달의뢰 계약,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의 포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임.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사업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절차가 많은 사업이나 민원이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편성된 이후에는 조속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는 물재생센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및 2020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해 3차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각각 279억원, 258억 88백만원, 341억 14백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였음.
- 이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을 위하여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11월에 국비가 교부(중랑 : 190억원, 탄천 : 166억원, 서남 : 300억원)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어려워져 이월한 것임.
- 국비교부 시기가 늦어진 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되나, 추후에는 중앙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부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리 확정짓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음.

4) 전용 (결산서 p.84~85)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4건, 8억 9백만원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8년도	1,202,535	4	809	0.06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수선유지비, 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총 4건 8억 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 유
					감액	증액		
4건				83,225	809	809		
1	물재생시 설과	탄천물재 생센터 민간위탁	214-05 수선유지비	5,663		235	2018.12.21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215 동력비	8,728	235			
2	물재생시 설과	서남물재 생센터 민간위탁	214-05 수선유지비	17,397		424	2018.12.21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215 동력비	17,757	424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3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07 퇴직급여	447		95	2018.11.19.	공무직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
			101-01 보수	9,820	95			
4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6		55	2018.11.19.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수 부족
			215 동력비	22,877	55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및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은 2018년도 슬러지 발생량이 2018년 예산 수립시 대비 탄천의 경우 4.4%(2,139톤), 서남의 경우 2.5%(3,854톤)이 증가하여 매립지 반입에 필요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동력비 일부를 수선유지비(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임.
- 당초 수선유지비와 동력비는 2017년도까지는 같은 편성목(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전용대상이 아니었으나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목이 수선유지비와 동력비로 구분하여 편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용이 발생한 것임.
-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은 2018년도말 퇴직예정인 공무직 4명(환경정비원 3명, 시설정비원 1명)의 퇴직금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연장근무(20일) 보수 및 신규채용 공

무직 2명의 보수 부족분에 대해, 진행잔액이 발생한 인건비와 동력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5) 채무부담행위액 (결산서 p.84)

- 해당사항 없음.

6) 계속비결산조사 (결산서 p.84)

-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용 (결산서 p.84~85)

- 2018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3건, 1억 91백만원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8년도	1,202,535	3	191	0.01	

-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은 시설비, 감리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총 3건 1억 91백만원을 변경하였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일자	사유
				감액	증액		
3건			30,458	191	191		
물재생 계획과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01-01 시설비	6,750		35	2018-12-07	지장물 이설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401-02 감리비	386	35			
물재생 시설과	중량물재 생센터 시설현대 화	401-01 시설비	12,852	101		2018-05-14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 준공전 설치 등 감리비 추가확보
		401-02 감리비	149		101		
중량물재 생센터	인력운영 비	101-03 무기계약근 로자보수	501		55	2018-11-19	기간제근로자 연장 근무에 따른 예산부족
		101-01 보수	9,820	55			

- ‘필동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는 필동배수분구(7,8구역) 공사중 하수박스(■1.8×0.8m) 신설구간내 총무로역 MBN 방송국 앞 KT통신케이블이 저촉되어 이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17백만원 중 일부가 부족하여 감리비 잔여분 3천 5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설계단계에서 실제 지하구조물 세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사업추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추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해 편성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중량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의 경우는 사업 시행 중 설계시 공일괄계약업체인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실시설계에서 누락시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 전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를 설치하였고,
 - 이에 따른 감리기간(책임기술자, 기계감리원)이 3개월 연장(당초 2018.3.3. → 변경 2018.6.30.) 되면서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그러나 감리기간이 연장된 근본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누락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본다면 감리비 증가분 역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 한편으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 누락 사실을 1차적으로 설계감리가, 2차적으로는 발주청이 발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계감리자와 발주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에는 그 책임 규명을 보다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을 정하는 행정절차가 요구됨.

8) 불용 (결산서 p.96~112)

-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722억 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0%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도	1,202,535	72,274	6.0

- 원인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잔액(363억 33백만원, 5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162억 14백만원, 22.4%) 순인데, 보다 정확한 설계를 통해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및 주변환경요인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예산집행 잔 액
2018년도	72,274 (100)	16,214 (22.4)	5,610 (7.8)	5,396 (7.5)	8,721 (12.1)	36,333 (50.2)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율 30% 이상 사업(불용액 3억 원 이상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65건에 해당됨.([표] 참고)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재생계획과	재정관리단앞 교차로 사각형거 개량	60	23	37	61.6%
2	물재생계획과	성수동1가 656-734 일대 하수관로 이설 설계 용역	200	72	128	63.9%
3	물재생계획과	대성사 일대 하수관로 개량	150	60	90	60.0%
4	물재생계획과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7,302	3,821	3,481	47.7%
5	물재생계획과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비	2,657	1,778	880	33.1%
6	물재생계획과	대학로3길 29 주변 원형관로 보수	350	232	118	33.7%
7	물재생계획과	동송길100 주변 원형관로 보수	750	524	226	30.1%
8	물재생계획과	자하문로36길3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83	217	43.5%
9	물재생계획과	황학동756~2469-2번지 사각형거 보수보강	530	313	217	41.0%
10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4	-	244	99.9%
11	물재생계획과	예비비	8,721	-	8,721	100.0%
12	물재생계획과	온곡중학교~온수골사거리간 하수관로 개량	50	33	17	34.2%
13	물재생계획과	연서로15길 35 원형관로 보수	360	196	164	45.5%
14	물재생계획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6,300	42,890	20,299	16.1%
15	물재생계획과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	4,000	2,857	1,143	28.6%
16	물재생계획과	방배로(방배역~반포천) 사각형거 신설	7,747	7,078	669	8.6%
17	물재생계획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8,000	6,236	1,369	17.1%
18	물재생계획과	신월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4,233	767	15.3%
19	물재생계획과	신월3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7,000	6,617	383	5.5%
20	물재생계획과	화곡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000	7,497	503	6.3%
21	물재생계획과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3,996	311	6.2%
22	물재생계획과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3,000	2,250	750	25.0%
23	물재생계획과	연희맛로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1,500	1,157	343	22.9%
24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	5,266	4,563	703	13.4%
25	물재생계획과	내수재해위험지구 수위계 설치	4,600	733	347	7.5%
26	물재생시설과	전기탈수기 시범사업	1,500	-	1,500	100.0%
27	물재생시설과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외부회계감사	28	-	28	100.0%
28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3,845	-	3,845	100.0%
29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매입비	55	-	55	100.0%
3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3,200	1,966	550	17.2%
31	물재생시설과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13,003	9,432	3,571	27.5%
32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4,872	42,956	1,917	4.3%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33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82,600	79,131	3,469	4.2%
34	중량물재생센터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중량물재생센터)	1,930	1,229	701	36.3%
35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50,331	46,706	3,415	6.8%
36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4,381	13,273	1,108	7.7%
37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1,312	20,375	937	4.4%
38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5,360	4,944	416	7.8%
39	난지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1,023	10,715	308	2.8%

○ 이 중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은 2010~2011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350여세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암사동 및 천호동 지역 통수능 부족관로의 성능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73억 2백만원 중 47.7%인 34억 8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불용사유는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구간과 동 사업의 일부 구간(약 120m)이 중첩되어 해당 공사구간은 별내선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사업에서 제외하여 공사비가 감소된 것임.
-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해당 구간의 하수관로 공사 추진 시 재료비 등에 대해 일부 강동구 및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관련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추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구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관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하수관로 종합정비’는 종로구 창신동 및 송인동 일대의 배수체계개선, 통수능 확보 등 기능회복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시설 및 시설물 내구연한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예산현액 26억 57백만원 중 33.1%인 8억 8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공사 낙찰차액 5억 1천만원, 이설비 잔액 1억 88백만원, 관급자재비 등 기타 정산잔액 1억 82백만원에 기인한 것으로,
 - 동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9.2%가 낙찰차액에 해당하는바 당초 설계가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노후 하수관로 내부 조사결과 도로함몰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263억원 중 16.1%인 202억 9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2018년 국비지원액 391억이 확정된 이후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 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이 239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에서 제외된 시비 배정잔액 152억원과 계약심사절감액 18억 19백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억 8천만원에 따른 것임.
 - 본 사업은 각 구청으로 재배정하여 구청별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일성 있는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 또한,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 사업은 목동 신시가지 남측(7~14단지) 오수관로의 노후·손상에 따른 악취, 배수불량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6억 5천만원 중 31.3%인 11억 4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관로 선형을 지장물(통신, 가스, 수도)을 고려하여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함⁸⁾에 따라 발생한 도급비(공법변경에 따른 절감액 포함), 지장물 이설비, 그리고 수목이설 공사비와 매달기 및 보호공 등의 직접공사비 등의 감소액 약 6억 47백만원과 낙찰차액 3억 7천만원 등에 기인한 것인데,
- 당초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장물 조사를 보다 철저히 했다면 애초에 이 같은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추후 설계용역 시에는 현장조사, 특히 지하 지장물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8) m당 개략공사비 : ▶ 보도 토공 m당 단가: 130,862원/m
▶ 도로 토공 m당 단가: 47,642원/m

- ‘전기탈수기 시범사업’은 하수슬러지 건조기의 효율저하 및 매립지 반입불가시 등에 슬러지 적체를 최소화하고자 슬러지 감량설비인 전기탈수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5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의회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지침’(평가담당관-4507)에 의거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0월 11일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종결하게 된 것에 기인함.
-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엔 적극 공감하나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 동 사업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동의하에 편성되어 이미 전면적인 시행에 착수된 것으로 볼 경우 전면적인 시행 이전을 시점으로 하는 동 조례의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음.

- 이는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사업들이 중도에 동 조례에 의거 재평가를 통해 그 추진여부를 재설정한다면 의회 승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바, 예산편성 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적용대상과 평가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38억 45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이는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사료되는바,
 - 이처럼 유관기관 협의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협의의 완전한 타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참고로, 동 사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8월 17일 고양시 내 난점마을 도로개설을 지

원하고 고양시 측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물재생시설과-10775)을 완료하고 2019년도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협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는 강화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물재생센터를 친환경적·주민 친화적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30억 3백만원 중 27.5%인 35억 7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종합시운전을 2016년 9월 22일 착수하였으나 총질소(T-N)가 보증수질 20mg/L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2월 20일 종합시운전을 중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 후 종합시운전을 재개하여 2019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음.
- 이는 종합시운전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인지 명확치 않아 일단 준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공사 귀책사유에 의해 종합시운전이 중단된 것으로 서울시와 시공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시가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금회 예산을 감추경한 것에 기인함.
- 서울시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물의 품질이나 목표성능 구현 여부를 각 시공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 도입을 통해 준공 시기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9)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19~136)

- 2018년말 기준 자산은 6조 6,458억 62백만원, 부채는 97억 14백만원으로 순자산(자본)은 6조 6,361억 48백만원임.
- 2018년도말 기준 부채는 97억 14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0.2% 수준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18년도	6,645,862	9,714	6,636,148	891,640	808,239	83,401

<자본 및 부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 본(A)	부 채(B)	비율(B/A)
2018년도	6,636,148	9,714	0.2

- 2018년도말 기준 채무는 15억원으로 부채의 15.4% 수준으로, 채무액 15억원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를 위해 폐지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부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차입한 채무액 1,112억 3천만원 중 1,097억 3천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액으로 2019년 전액 상환할 계획에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9,714	9,714	-	9,714	-
채 무	1,500	1,500	-	1,500	-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환경개선특별회계	3,000	1,500	-	-	
상환예정액	3,000	1,500	-	-	

- 한편, 공급원가는 톤당 938.98원, 공급단가는 톤당 619.29원으로 요금현실화율⁹⁾은 65.9%임.

<하수도요금의 톤당 원가 및 비율>

(단위: 원,%)

구분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 재료비	수선 교체비	경상·민간 이전	감 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비 용	자기자본 비용	기타 경비
2018	938.98 (100.0%)	52.65 (5.6%)	53.38 (5.7%)	13.03 (1.4%)	235.31 (25.1%)	94.00 (10.0%)	259.70 (27.7%)	0.18 (0%)	267.48 (28.5%)	-36.75 (-4%)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³)

구 분	공급원가	공급단가	요금현실화율(%)	요금인상요인
2018년	938.98	619.29	65.95	51.62

9)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³) / 요금원가(원/m³)] x 100

- 현재 공급원가 및 공급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약 51.62%의 요금인상요인¹⁰⁾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와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급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하수도 신설 및 정비 비용 등)를 충당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앞서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비교 (2019년 기준)>

사용량 구분(m ³)	요금(원/m ³)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30이하	360	400	170
30초과~50이하	550	930	
50초과	790	1,420	

1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x 100